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위생용품제조업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소분실·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에 필요한 작업시설을 말하고,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작업장은 전처리실·세탁실·포장실과 그 밖에 위생물수건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작업시설을 말한다.

제2호가목3)(종전의 2))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업장 내의 작업시설은 각각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한다.

제2호다목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제2호다목1)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1)마)(2)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를 “「축산물 위
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로 한다.

가) 창고를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
을 운영하면서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营业을 함께 운영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
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
업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4) 「약사법」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을 제조하는 영업

(5)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별표 7 I. 일반기준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
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수입업의 위반사항란 중 제3호나목1)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제품명, 용도, 원료명 또는 성분명 및”을 “원료명 또는 성분명,”으로 하고, 같은 호 2)를 3)으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나목의 “경우(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표시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변경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뒤쪽의 유의사항란의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 면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
수입업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u> <u>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u> <u>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u> <u>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u> <u>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u> <u>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u> <u>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u> <u>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